

등록기준지는『본적』지 주소를 말하며,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시청이나 주민센터에서『기본증명서』를 발급하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학원설립 · 운영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8일
------	-----	------	----

설립자	성명	한글 강 민 영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840123-20*****
		한자	
	등록 기준지	충남 부여군 규암면 충의로	
	주소(도로명)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 3층	(e-mail : minjizzang@naver.com)

신청 내용	목적	학교교과 교육을 위한 학원설립		
	명칭	천안가나다학원	(휴대전화 : 010-0123-****)	
	위치(도로명)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 2층	(전화번호 : 041-529-0652)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학원의 종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교교과교습학원 <input type="checkbox"/> 평생교육직업학원	교습과정 입시	
	정원	100명		
	강사명단	별첨		
	교습비등	별첨		
	시설·설비	별첨		
개강 예정 연월일	년도 월 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강 민 영 강민영(인)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청인(설립자) 제출서류	1. 원칙 1부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제34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학원 시설평면도 1부 4. 정관,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5.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일반/집합) 2. 설립자가 개인의 경우: 신분증 3.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설립자)

강 민 영 강민영(인)

결재	재무과장		평생교육팀장	
접수일시			담당자	
접수번호			처리과	재무과

학원원칙

◆ 학원『원칙』이란, 학원의 **규칙**으로서 원칙을 준수하여 학원을 운영하여야 하며, 원칙에 위배하여 학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일시수용능력인원』이란, 학원 강의실 전체에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총 인원수를 말하는 것으로, 강의실에 배치된 **책걸상수**를 말합니다

제1조(목적) 이 학원은 **학교교과**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학원은 **천안가나다학원**이라 한다.

제3조(위치) 이 학원은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 2층** 에 둔다.

제4조(정원) 이 학원의 수강생의 총 정원은 **400명**으로 하되, 각 반별 일시수용능력 인원 및 정원은 다음과 같다

교습과정	반	일시수용능력인원		정원 (일시수용능력인원×부제회수)	비고
		강의실	100명	100명 * 4부제 = 400명	
학교교과(입시)	5	강의실	100명	100명 * 4부제 = 400명	
총 계			100명	400명	

◆ 『부제회수』란, 하루에 수업할 수 있는 총 강의횟수(회전타임)를 말하며, 『정원』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수강생의 수를 말합니다.

제5조(교습과정) 이 학원의 각 반별 교습과정은 다음과 같다.

교습과정	1일 교습시간	수료시간	교과목		비고
			과목명	총이수시간	
입시(초)	60분	1개월	초등영어	1,200분	
입시(초)	60분	1개월	초등수학	1,200분	
입시(초)	60분	1개월	초등(국,영,수,사,과)	1,200분	
입시(중)	120분	1개월	중등영어	1,440분	
입시(중)	120분	1개월	중등수학	1,440분	
입시(고)	120분	1개월	고등영어	1,440분	
입시(고)	120분	1개월	고등수학	1,440분	

제6조(수료) ① 이 학원의 수료인정은 출석일수, 이수시간 및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및 이수시간은 제5조에 규정된 수료기간 및 총 이수시간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7조(휴강일) ① 이 학원의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및 공휴일
2. 정기휴일
3. 개원기념일
- ②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변, 기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강을 할 수 있다
- ③ 휴강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교습할 수 있다.

제8조(교습비등) ① 이 학원의 교습비등은 교육장에게 등록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징수한다.

- ② 이미 납부된 교습비등 증 반환 등에 대하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며, 교습비등 반환은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습비등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근로 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강료의 납입이 곤란한 자
3. 보훈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4. 당해 교육과목에 재능이 탁월한 자

[예시] 5. 형제자매할인 각1만원 할인
6. 2과목 이상 수강자 과목별 각1만원 할인
7. 장학생 할인 → 천안가나다학원 장학생 할인규정에 의함.

제9조(시행세칙) 이 원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 [교습비 감면사항]도 동일한 기준을 정해서 감면처리 해줄 수 있도록 할 것.

이 원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교습비 책정관련 기본 안내

■ 천안교육지원청 교습비 기준액(2016.10.1.자 변경)

분야	교습과정	분당단가	분야	교습과정	분당단가	분야	교습과정	분당단가
입시 검정 보습	입시(초)	136	예능	피아노(초급)	115	기타	웅변	115
	입시(중)	188		피아노(중급)	126		주산	120
	입시(고)	209		피아노(고급)	136		속셈	120
	독서논술(초)	178		바이올린(일반)	167		속독	133
	독서논술(중)	188		기타악기	167		컴퓨터	105
	독서논술(고)	209		미술(일반)	126		서예	84
	진학상담.지도	212		미술(입시)	149		바둑	115
국제화	외국어(유,초)	199		무용(일반)	188		한문	115
	외국어(중)	209		무용(입시)	262		국악	157
	외국어(고)	220		실용음악(일반)	157		연기	131
			실용음악(입시)	251	기타분야	115		

○ 교습비는 교습과정별 분당 단가를 적용함.

[월 교습비 = 교습시간(분) × 교습과정별 분당단가] **이하**로 적용
 ↳ 수업시간(분)×주○회×4주

○ 교습비는 천안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금액**만큼만 정확히 받으시는 것이 원칙이며, 변동이 될 시에는 시행일로부터 **★7일전까지** 교습비 변경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평생교육직업학원]**은 교습비 상한기준액은 없으나, 수강료 변동시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사전 신고(7일전)하여야 하며, 신고한 대로만 교습비를 받으셔야 합니다.

○ 기타경비 안내

항 목	내 용	유 의 사 항
모의고사비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지를 구매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p>♣ 기타경비를 책정한 경우, 책정된 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산출내역서, 물품 구매영수증(견적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계약서등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월별로 보관하여야 함.</p> <p>♣ [통학차량비]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시청 교통과(☎521-5627)로 『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허가증 사본을 천안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여야 교습비 등록시 기타경비 중 [차량비]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p>
재료비	학습자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재료비	
피복비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급식비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기숙사비	숙박시설을 갖춘 교과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차량비	학습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데 드는 비용	

교습비는 천안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금액만큼만** 정확히 받으시는 것이 원칙이며, 변동 될때에는 시행일로부터 **★7일전까지** 교습비 변경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교습비등 등록(변경) 신청서

학원(교습소)명		천안가나다학원						등록번호									
주소(도로명)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 2층															
설립·운영자		강 민 영						전화번호	041-529-0652								
교습 과정	개설반	정원	월 총교습시간(분)①				교습비 ②	분당 교습비 ③=②/①	기타 경비						교습비등 합계 ⑤=③+④	비고	
			분	주(회)	월(주)	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기타경비 소계④			
입시	초등영어	100	60분	× 5회	× 4주	= 1200분	156,000	130.00								156,000	
입시	초등수학	50	60분	× 5회	× 4주	= 1200분	156,000	130.00								156,000	
입시	초등(국,영,수,사,과)	50	120분	× 3회	× 4주	= 1440분	156,000	130.00								156,000	
입시	중등영어	50	120분	× 3회	× 4주	= 1440분	250,000	173.61								250,000	
입시	중등수학	50	120분	× 3회	× 4주	= 1440분	250,000	173.61								250,000	
입시	고등영어	50	120분	× 3회	× 4주	= 1440분	280,000	194.44								280,000	
입시	고등수학	50	120분	× 3회	× 4주	= 1440분	280,000	194.44								280,000	
			×	×	=												
			×	×	=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교습비등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원설립·운영자

강 민 영 강민영 (인)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인터넷에서 [네이버지도]를 출력
하시면 됩니다.

(**천안가나다학원**)

학 원

교 습 소

위치도

주 소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 2층	전화번호	529-0652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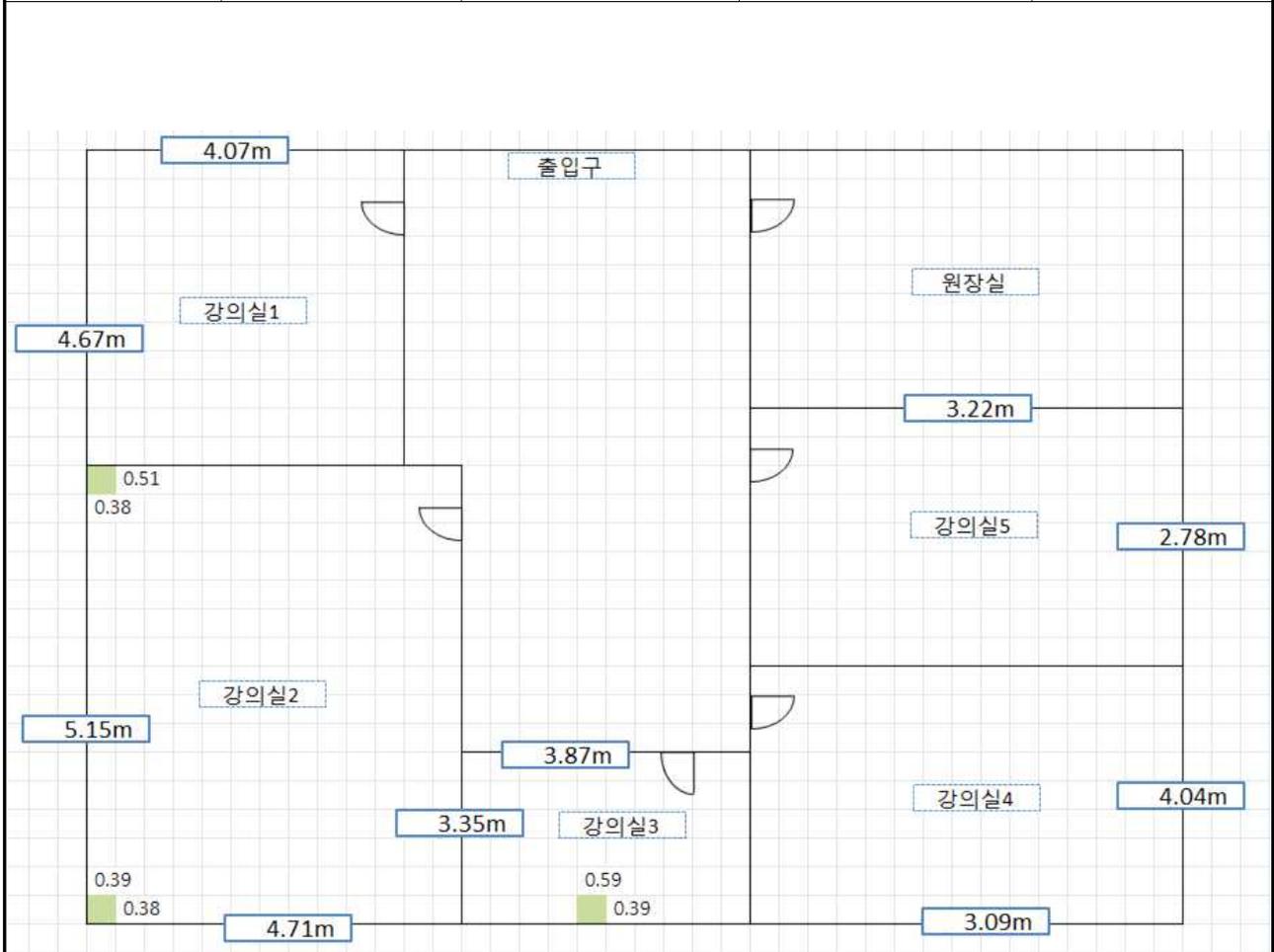
※ 참고사항 : 설립예정학원건물과 6m 이내에 위치한 건물에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1.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2. 각종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단란주점(접대부를 고용하는 술집종류)등
3. 호텔, 여관, 여인숙, 공중목욕탕 중 휴식시설
4. 사행행위장, 경마장, 전자유기장, 특수목욕탕중 터키탕, 무도장,
무도학원,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 위치도는 상세히, 연필로 작성하지 말것

(천안가나다)학원의 시설 평면도

	구 분	수 량	면 적	비 고
시 설 현 황	강의실	5실		



※ 작성시 주의사항 ※

◎ 시설평면도는 상세히 그리시고, 시설의 길이 및 면적의 수치를 정확히 작성할 것

(**천안가나다**) 학원 건물현황도

1층	동물병원, 제과점, 분식점
2층	<u>신청지(학원)</u>
3층	독서실, 법률사무소
4층	미용실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11층	
12층	
13층	

◆ 동일건물내 유해업소 인근 학원설립 제한

가. 유해업소의 종류 → PC방(청소년출입가), 만화가게, 당구장 제외(학원설립가능)

- ① 극장, 종포 화약류 및 천연가스, 액화가스 제조장 및 저장소
- ② 카바레, 스탠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싸롱, 카페, 인삼차집, 이와 유사한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무도장, 무도학원, 전화방, 비디오방담배자동판매기, 성인용품판매점
- ③ 컴퓨터게임장(성인용), 전자오락실(성인용), 전화방, 비디오방
- ④ 호텔, 여관, 여인숙, 증기탕 ⑤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폐기물(쓰레기)수집장소

나. 건물의 연면적이 1,650㎡미만일 경우 : 동일 건물 내 설립불가

다.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일 경우 : 같은 층 및 위층 또는 아래층 제한

인접층	6m		6m
동일층	20m	학원	20m
인접층	6m		6m

원장선생님께서 강사를 겸하시는 경우만, 설립신청시에 강사채용등록을 해드립니다.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학원의

- 강사(외국인강사 포함)
- 영양사
- 생활지도담당인력

채용등록 신청서

① 학원명	천안가나다학원	② 등록번호	
③ 설립·운영자	강민영	④ 전화번호	041-529-0652

통 보 내 역

⑤ 연번	⑥ 성명	⑧ 주소	⑨ 학력	⑪ 채용일자	⑬ 주요경력 (학교, 학원)	⑭ 성범죄 조회유무
	⑦ 주민등록번호		⑩ 소지자격증	⑫ 담당과목		
1	강민영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 2층	대졸			
	840123-20****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 외국인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채용(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학원 설립·운영자 **강민영** 강민영(인)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구비서류 1. 자격입증 구비서류 각 1부(최종학력증명서등)

2.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부

3. 외국인강사의 채용 구비서류 각 1부

(법제13조의2, 시행령제12조의2, 시행규칙 제10조의2)

- ①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
- ② 범죄경력 조회서: 자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자국 전(全) 지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함)
- ③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 ④ 여권 및 사증 사본(원본지참)
- ⑤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별지 제12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명	강민영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840123-20*****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010-0123-****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강민영 강민영(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독서실 원칙

제1조(목적) 이 독서실은 학습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독서실은 **천안가나독서실**이라 한다.

제3조(위치) 이 독서실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 3층** 에 둔다.

제4조(정원) 이 독서실의 학습자의 정원은 **100명** 으로 한다.

제5조(휴원일) ① 이 독서실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

1. 정기휴일
2. 개원기념일

② 제1항 각 호 외의 비상재변,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① 이 독서실의 이용료는 교육장에게 등록된 금액으로 한다.

② 이미 납부된 이용료의 반환 등에 대하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그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자
2.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이용료의 납입이 곤란한 자
3. 보호대상자나 그 자녀

제7조(시행세칙) 이 원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이 원칙은 **2015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